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15.

운영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9년 9월 2일

나. 발 의 자 : 윤준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09년 9월 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 9. 11)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윤준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안 제15조)
-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신설(안 제16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專 門 委 員 권 오 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제한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안 제15조(겸직신고)에서 겸직신고 방법, 서식 등을 정하고, 안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된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	-----

제출년월일 : 2009. 9. 2

제 출 자 : 윤준용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2009.4.1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15조)
- 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및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서울특별시 행정과-9566(2009.4.27) 개정조례 표준안 이첩통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2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영등포구의회 의원 겸직 변경 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백일) 연월원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 ----- ----- -----.</p>
<p>【신설】</p>	<p>제1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p>